의왕역 SK VIEW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1-427-1857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10년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7.29.)로부터 3년 (단, 3년 내 소유권이전등기 시 해제)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7.10.(금)	'26.08.28.(금)	'26.09.02.(수)	'26.09.07.(월)	'26.09.08.(화) ~ '26.09.09.(수)	'26.09.12.(토)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공급받은 최초 계약자(수분양자)는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최초 공급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를 득해야 합니다. 당 사업지가 위치한 경기도 의왕시 삼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거래 대상의 토지면적(대지지분)이 6㎡ 초과일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본 아파트의 전 주택형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소유권 행사(전매, 매매, 의무거주기간, 주택처분 등)에 제한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잔여세대(무순위)	O		X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28.(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25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7.10.(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301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9.02.(수)	'26.09.07.(월)	'26.09.08.(화) ~ '26.09.09.(수)	'26.09.12.(토)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의왕역 SK VIEW 견본주택 : 경기도 의왕시 삼동 277-6번지 (10:00 ~ 16:00)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10년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 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청약 신청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의왕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07.29.)로부터 3년간(단, 3년 내 소유권이전등기 시 해제) 적용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2-24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4층, 13개동, 일반분양 820세대 중 잔여 17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225	01	059.8216A	59A	4	103	405
					105	203, 302
					110	302
	02	084.6871A	84A	13	105	305
					106	202, 303, 405
					107	202, 203
					108	301, 302, 401, 405
					111	402
					112	204, 401
합계				17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타입)	동/호 구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 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7-02-15	2027-08-17	2028-02-15	2028-10-16	2029-02-15	2029-06-15	
59A	103동 5호 105동 2, 3호 110동 2호	2층	1	275,034,600	570,965,400	-	846,000,000	10,000,000	7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253,800,000
		3층	2	280,886,400	583,113,600	-	864,000,000	10,000,000	7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86,400,000	259,200,000
		4층	1	283,812,300	589,187,700	-	873,000,000	10,000,000	7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87,300,000	261,900,000
84A	105동 5호 106동 2, 3, 5호 107동 2, 3호 108동 1, 2, 5호 111동 2호 112동 1, 4호	2층	4	343,955,800	714,044,200	-	1,058,000,000	10,000,000	95,800,000	105,800,000	105,800,000	105,800,000	105,800,000	105,800,000	105,800,000	317,400,000
		3층	4	351,758,200	730,241,800	-	1,082,000,000	10,000,000	9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324,600,000
		4층	5	355,334,300	737,665,700	-	1,093,000,000	10,000,000	99,300,000	109,300,000	109,300,000	109,300,000	109,300,000	109,300,000	109,300,000	327,900,000

■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 시	입주지정기간	
59A	17,000,000	1,700,000	15,300,000	-
84A	21,000,000	2,100,000	18,900,000	-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세부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7.10.)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세부 품목 및 납부일정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6.07.10.)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 ~ 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 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 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 ~ 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를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9.07.(월) ~ 2026.09.16.(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9.07.(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 입주자) 제출 서류 [금회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8.)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 구분 : 본인발급 / 용도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 제출처 : "의왕역 SK VIEW"로 설정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변동이력이 있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배우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상세"로 발급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분리세대)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의심 세대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본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단신부임 입증 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 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상세)	배우자 및 세대원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전체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대리인 추가서류	○		위임장	본인	■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위임)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상기 제출서류는 금회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6.09.12.(토) (1일간, 10:00~16:00)	의왕역 SK VIEW 견본주택 (경기도 의왕시 삼동 277-6번지)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구분 : 본인발급 / 용도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체결" / 제출처 : "의왕역 SK VIEW"로 설정하여 발급] ※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견본주택 비치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증빙자료 포함)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공사비를 합산한 금액이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함
		○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한 서류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	본인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계약자)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공급계약 체결 위임 (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 : 추후 별도 통지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1차 계약금(최초 계약 시)	하나은행	231-910059-61104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가상계좌 부여		

※ 계약금은 상기 명시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하나은행 231–910059–61104,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로 관리됩니다.
※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계약시에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 예정임.)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정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가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인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최초 계약 시)	하나은행	231–910059-451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가상계좌 부여		

※ 계약금은 상기 명시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하나은행, 231 – 910059 – 45104,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로 관리됩니다.
※ 잔금 납부계좌는 계약시에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 예정임.)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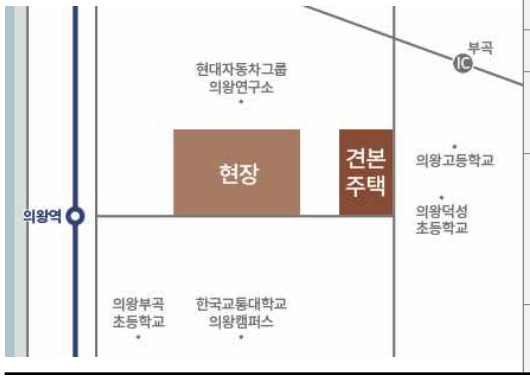
■ 참고사항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현황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부곡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34171 - 0008284	110111 - 0038805
주소	경기도 의왕시 중앙샛길 38-1, 4층(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19(수송동)

견본주택 안내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의왕시 삼동 277-6번지				
운영기간	2026년 07월 16일부터 분양완료시까지				
분양문의	☎ 031 – 427 - 1857				
주요일정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26.08.28.(금)	'26.09.02.(수)	'26.09.07.(월)	'26.09.08.(화) ~ '26.09.09.(수)	'26.09.12.(토)
공식 홈페이지	https://uws.skview.co.kr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고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uws.skview.c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